■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0. 7. 3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제139조 및 제141조 관련)

1. 굴착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km/h)			
	24km/h	32km/h	40km/h	48km/h
23톤 미만	10.0	16.7	24.8	34.9
23톤 이상	11.6	18.8	27.6	38.2

2. 모터 그레이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km/h)							
	16	18	22	26	30	34	38	42
16톤 미만	4.2	5.1	6.9	9.0	11.3	13.9	16.7	19.8
16톤 이상 32톤 미만	5.2	6.2	8.6	11.4	14.6	18.1	22.0	26.2
32톤 이상	6.4	7.9	11.1	14.8	19.0	23.8	29.2	35.0

3. 불도저 및 로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						
	18km/h	22km/h	26km/h	30km/h	34km/h	38km/h	42km/h
16톤 미만	5.2	7.1	9.2	11.6	14.4	17.2	20.4
16톤 이상 32톤 미만	6.6	9.2	12.2	15.5	19.3	23.5	28.1
32톤 이상 64톤 미만	7.9	11.1	14.8	19.0	23.8	29.2	35.0
64톤 이상 127톤 미만	9.1	12.9	17.4	22.5	28.3	34.8	41.9
127톤 이상	11.0	15.8	21.3	27.8	35.0	43.2	52.2

4. 스크레이퍼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			
	24km/h	32km/h	40km/h	48km/h

23톤 미만	10.9	17.6	26.4	36.4
23톤 이상 45톤 미만	14.2	22.1	31.8	43.0
45톤 이상 68톤 미만	17.6	26.7	37.3	49.7
68톤 이상	20.9	30.9	43.0	56.4

5. 지게차(규격 10톤 이하로 한정하고, 트럭지게차의 작업장치 조종석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하중상태	제동초속도(㎞/h)	제동거리
기준무부하상태	20	5 이내
기준부하상태	10	2.5 이내

비고 1. 규격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식 로더의 제동능력을 준용한다.

2. 최고주행속도가 20㎞/h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를 제동초속도로 본다.

6. 그 밖의 건설기계(트럭지게차의 주행차대 운전석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동거리 (단위 : 미터)

구분	최고주행속도			
	80㎞/h 이상		80㎞/h 미만	35㎞/h 미만
제동초속도(V)	60㎞/h	최고주행속도의 80퍼센트(90㎞/h를 초과하는 경우 90㎞/h로 본다)	35㎞/h	해당 건설기계의 최고주행속도
제동거리	$0.15V+0.0077V^2$ 이하	$0.15V+0.0097V^2$ 이하	14 이하	5 이하